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2.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3. 1. 31
- 다. 상정일자: 제26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3.2.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임원 구성과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여 융통성 있는 재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임원 범위 명확화, 임원 후보 추천 절차 수정(안 제7조제3항)
- 나. 당연직 이사 구성 내용 삭제(안 제7조제4항)
- 다. 선임직 이사 구청장 임명 내용 삭제(안 제7조제4항)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마포문화재단(이하 “재단”) 임원 구성과 추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7조 제3항은 재단 임원의 임명 시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있음.
-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는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의 임용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 인사, 예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을 단체장이나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하고 있음.(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²⁾)
- 이에 따라 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³⁾」에서는 임원추천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2)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p.3

③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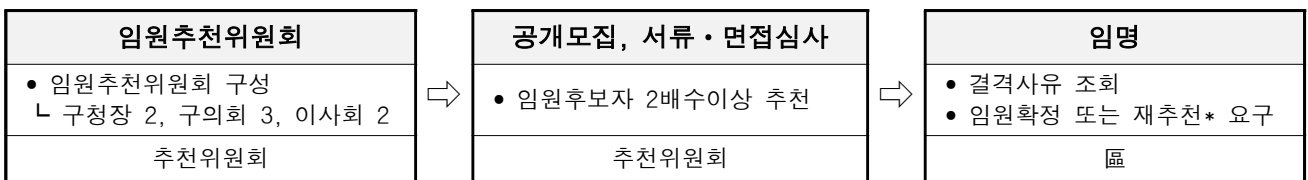
- 출자출연기관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⁴⁾(이하 “공기업인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및 재단의 임원 선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인사기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이사장), 비상임 이사, 감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공단은 「지방공기업법⁵⁾」 및 「공기업인사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음.

〈 공단 임원 선임 절차 〉



※ 재추천 요구: 결격사유 해당 또는 공단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 절차)

- 반면에, 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면 “이사회 추천”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음.
- 참고로, 문화재단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22개 자치구중 재단 임원 선임 시 “이사회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영등포구,

-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4) 「지방 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p.5

아.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무

- 관계 법령 및 지방공사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 사장(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
-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이사장)에게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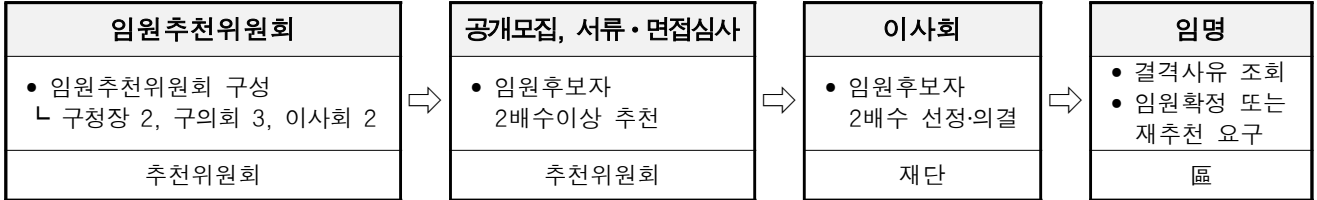
5)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 마포구 산하기관 현황

공기업(1)	출자·출연기관(3)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복지재단

동작구 등 총 9개 구임.

〈 재단 임원 선임 절차 〉



※ 재추천 요구: 결격사유 해당 또는 재단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및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 따라서, 재단 임원 임명 시 공단과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당연직 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선임직 이사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임.

〈 마포문화재단 임원 구성 현황 〉

구 분	이사장	상임이사(대표이사)	이 사	감 사
인 원	• 1명	• 1명	• 13명(선임직 11/당연직 2)	• 1명
직 무	•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됨	•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함	• 재단의 재산현황 및 회계감사, 재단의 운영과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 등을 함
근무형태	• 비상근	• 상근	• 비상근	• 비상근
임 기	• 3년(연임 가능)	• 3년(연임 가능)	• 2년(연임 가능)	• 2년(연임 가능)
임명방법	• 임원추천위원회 전형 절차를 거쳐 <u>이사회</u>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 임원추천위원회 전형 절차를 거쳐 <u>이사회</u>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 선임직 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전형 절차를 거쳐 <u>이사회</u>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 당연직 이사: 관광일자리국장, 기획재정국장	• 임원추천위원회 전형 절차를 거쳐 <u>이사회</u> 에 서 선임하는 자

-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단

임원 구성과 추천 및 선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하기관 임원의 채용 절차를 보면,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로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한 이후 자치단체장의 최종 결정으로 임원을 임명하게 됨. 그 결과, 단체장의 측근이나 선거과정의 공신들이 낙점되면서 낙하산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비전문가가 경영진에 임명되면서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경영 등으로 재정 악화를 초래한 사례도 있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자치단체장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자치단체장 추천 2명, 지방의회 추천 3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회 추천 2명⁶⁾)
-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산하기관장 임용 시 후보자의 사전 검증절차로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기도 함.⁷⁾
- 물론, 산하기관 임원 임명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이지만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므로, 개선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재단의 임원⁸⁾ 중 상근이사의 명칭을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6)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2016. 3. 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및 운영 현황:** 지방의회에는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지방공기업 등 기관장 임용 관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권한이 없으나, 상당수 지자체가 협약이나 자체 훈령·조례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들어서는 4개 기초의회까지도 도입하는 추세에 있는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점차 확산되고 있고, 각 의회 사정을 감안해 다양한 형태로 도입·운영하고 있음.

※ 기초의회 : 서울 관악(2016년), 서울 강동(2019년), 경기 과천(2020년), 경기 의왕(2021년)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법을 근거로 설립된 재단의 “상임이사” 명칭을 변경하는 건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고⁹⁾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상임이사를 법인의 대표로 등재하여 재단의 책임경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아울러,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안 제2조에 중복 표기된 문구를 삭제함.

원 안	수정의견	비 고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마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마포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복 표기 문구 삭제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개정 2008.5.8., 2012.12.31.)

※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정관

제6조(임원)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1명(이하 “대표이사”라 한다)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1명

9) 상법(제389조)에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반드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민법에서는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건은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음.

【참고자료】

▣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2023년 1월 기준

시도	관련근거	대상	도입	실적		
				합계	'20년간 실시	'19년 12월말까지
서울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5개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15.8.17	11회	3회	8회
부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서	6개 지방공기업 (공사·공단)	'18.8.29	8	0	8회
대구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간 인사청문협약서	산하 지방공기업(4), 의료원(1)	'17.6.20	7회	3회	4회
인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 지침 ('13.1.28 제정)	정무부시장, 5개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11.10.13	13회	1회	12회
광주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업무협약서	8개 산하기관	'15.2.25	23회	2회	21회
대전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 간담회 운영규정	4개 공기업 사장·이사장	'14.9.26	11회	2회	9회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4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	'18.12.12.	2회	1회	1회
세종	'없음'	-	-	-	-	-
경기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	6개 공공기관장	'14.8.29	21회	3회	18회
강원	강원도 산하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4개 산하기관	'15.7.7	10회	3회	7회
충북	충청북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청문 협약	4개 기관장	'19.9.17	3회	1회	2회
충남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인사청문협약서	7개 공공기관장	'18.9.14	5회	0회	5회
전북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협약	5개 기관장	'19.1.16	4회	3회	1회
전남	도지사와 도의회 간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협약 실시	5개 공공기관	'15.1.28	10회	1회	9회
경북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	5개 기관장 (지방공기업2, 출자·출연3)	'16.12.19	5회	3회	2회
경남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 의장 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서	6개 출자·출연기관	18.8.28			6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별정직 :공무원 부지사	'06.7.1	8회	1	7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06.7.1	8회	-	8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도의회 예규)	행정시장	'14.9.11	9회	2	7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도의회 예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5개 기관)	'14.10.8	9회	1	8회

▣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조례 현황

〈2023. 1. 기준〉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1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임원의 구성 등) ①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재단의 임원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7. 10. 13.> ④선임직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⑤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임원) ①재단은 이사장 및 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장은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임명한다. ④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당연직이 아닌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10.10.27)	
3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재단의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임원추천위원회
4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구성)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사장 및 부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사장 및 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5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 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당연직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⑤선임직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⑥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⑧임원의 선정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
7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 및 임기) ①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7.18.)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 ④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⑥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0.11.5.) ⑦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표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9.7.18, 2020.11.5.)	이사회/ 임원추천 위원회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8	강 북 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의 구성) ①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9.5.10.> ②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한다. ③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5.10.> ⑤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신설 2019.5.10.> ⑦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5.10.>	이사회
9	도 봉 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4.5.>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27., 2022. 12. 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한다.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8.4.5.>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원추천위원회
10	노 원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7.>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의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업무 소관 국장과 노원문화원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7.>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⑥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11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12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5.8, 2012.12.31.) ② 삭제 <2012.12.31.>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한다.(개정 2008.5.8, 2012.12.31.) ④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구의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2013.9.26, 2014.11.20, 2019.7.11, 2022.9.15.>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2.12.31.>	이사회
13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되,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② 이사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양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12.30>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12.30> ⑥ 상임이사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12.30> ⑦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⑧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	임원추천위원회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단 설립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4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0.08.11., 2019.5.2.>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 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8.11., 2019.5.2.>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5.2.>	이사회
15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10.15.> ②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 중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및 경영 분야에 전문성을 겸한 사람으로, 그 외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⑥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15.>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2.10.15.> ⑧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원추천위원회
16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12.22.> 1. 행정국장 <개정 2019.10.31.> 2.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 3. 복지국장 ⑥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	이사회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⑧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7	동 작 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당연직 이사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생활경제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2., 2022. 9. 22.> 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⑤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사회
18	관 악 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③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2.31.> ④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서 초 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각각 구청장이 임명한다.	

연번	자치구명	조례명	임원 조항	비고
20	강 남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8조(임원의 구성 및 임면·해임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p> <p>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 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04, 2015.07.10></p> <p>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④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p> <p>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⑥ 상임이사는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p> <p>⑦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권위 시에는 구 소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p>	이사회
21	송 파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p>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p> <p>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p> <p>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9.7.1.></p> <p>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이사회
22	강 동 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8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되, 성별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표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p> <p>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p> <p>④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p>	

■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비교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명(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명(구청장 추천 2, 의회 추천 3, 이사회 추천 2)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정관의 변경,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 등에 관한 사항 6.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임원의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1.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원후보 모집 및 심사 2.이사회에 임원후보 추천 3.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업무처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할 때에는 이사회에 즉시 그 결과를 통보 이사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 중 최종 임원후보 대상자를 2배수로 선정·의결하여 구청장에게 추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2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9. 21., 2013. 12. 4., 2016. 3. 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3-1관련
----------	--------

발의년월일 : 2023. 2. .

발 의 자 :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가. 중복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고 ‘이사’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나. 재단의 대표성을 표시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자 재단의 임원 중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중복 표기된 문구를 삭제함. (제2조)
- 나. ‘이사’를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로 변경함. (제7조)
- 다.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함.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한다**)재단”을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이사**”를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사로 구분하되 당연
직 이사는 구의 관광
경제국장과 재정관
리국장으로 하고, 선
임직 이사는 구청장
이 임명한다.

사로 구분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생략)
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생략)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⑤ 대표이사-----

-----.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표이사-----

-----.

제9조(이사회) ① 재단
에는 의사결정기구
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
에는 의사결정기구
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9조(이사회) ① ----

----- 대표이사 -
-----.

② (생략)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 이
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 이
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회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임명한다.

----- . -----

----- 대표이사-----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직원의 임면) -

----- 대
표이사----- .